



| 보건복지부       | 보     | 도 참         | 고        | 자 료          |
|-------------|-------|-------------|----------|--------------|
| 배 포 일       |       | 2020. 5. 31 | l./(총 22 | ·메)          |
| 중앙사고수습본부    | 팀 장   | 홍 승 령       |          | 044-202-3575 |
| 전략기획팀       | 담 당 자 | 장 태 영       |          | 044-202-3576 |
|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 팀 장   | 노 혜 원       |          | 044-200-2293 |
| 기획총괄팀       | 담 당 자 | 이 승 훈       |          | 044-200-2295 |
| 국토교통부       | 과 장   | 이 진 철       |          | 044-201-4016 |
| 물류산업과장      | 담 당 자 | 이 양 구       |          | 044-201-4018 |
| 고용노동부       | 과 장   | 김 동 욱       | 전 화      | 044-202-7740 |
| 산업보건과       | 담 당 자 | 고 병 곤       |          | 044-202-7743 |
| 의국인인력담당관    | 과 장   | 업 대 섭       |          | 044-202-7157 |
| -           | 담 당 자 | 오 지 영       |          | 044-202-7145 |
| 중앙사고수습본부    | 팀 장   | 김 정 숙       |          | 044-202-3155 |
| 생활방역팀       | 담 당 자 | 김 성 철       |          | 044-202-3615 |
| 중앙사고수습본부    | 팀 장   | 한 상 균       |          | 044-202-3232 |
| 특별관리전담반     | 담 당 자 | 이 웅 채       |          | 044-202-3238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물류시설 점검상황 및 조치 계획, △사업장 긴급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물류시설 점검상황 및 조치 계획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였지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부산에서 고3학생의 확진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이행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수칙 위반 시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도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잘 홍보하여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도입하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부천 물류 센터 등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8.9명으로 이전 2주간의 18.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93명으로 치료체계의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은 7.4%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은 80%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 <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

|                                  | 5.3.~5.16.    |
|----------------------------------|---------------|
| 신규 확진자                           | 18.4명         |
| <b>집단 발생1<sup>)</sup></b> (신규기준) | 1건            |
| 감염 경로 불명 비율                      | 6.2% (16/257)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sup>2)</sup>        | 80% 미만        |

|               | 5.17.~5.30.   |
|---------------|---------------|
|               | 28.9명         |
| $\Rightarrow$ | 12건           |
|               | 7.4% (30/404) |
|               | 80% 미만        |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 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2 물류시설 방역점검 결과 및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 주요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물류센터 32개소에 6월 1일(월)까지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29일(금)~30일 (토)에 수도권 물류센터 20개소에 대한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 점검반장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점검자 :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경기도 등 50명











- 현장점검 결과, △물류센터 현장 맞춤형 방역지침 부재 △전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 점검을 통해 확인한 **방역관리 미흡 사항**은 **총 135건**\*이었는데, 이 중 **25건**(근무자 마스크 미착용, 휴게시간 거리유지, 방역 안내문 부착 등)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고, 나머지 **미흡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 \* 지적사례: △식당·휴게장소 작업자 간 거리 두기 미흡 △엘리베이터 등 손 소독제 미비치 △장비·설비에 대한 소독 미흡 △작업화·작업복 공동사용 등
- 정부는 6월 2일(화)에 물류시설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식당 내 아크릴 칸막이 설치 △교대작업자 환복· 교육 공간 확충 등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장 점검 시, 지적 건수가 많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 □ 정부는 주요 유통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물류시설 4,361개**소를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방역지침 준수, 질병의심환자 대응체계, 방역물품 구비,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전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택배 터미널/영업용 물류창고(국토부), △식품·축산 창고(식약처), △항만·수산물 창고(해수부), △보세창고·지정장치장(관세청), △유해물질창고(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 점검대상 물류 시설 현황 >

(단위: 개소)

| 총계      | 택배<br>터미널 | 영업용<br>물류창고 | 식품・축산<br>창고 | 항만•수산물<br>창고 | 보세창고 •<br>지정장치장 | 유해물질<br>창고 | 유통물류<br>센터 |
|---------|-----------|-------------|-------------|--------------|-----------------|------------|------------|
| <b></b> | 국         | 토부          | 식약처         | 해수부          | 관세청             | 환경부        | 산업부        |
| 4,361   | 84        | 1,321       | 1,323       | 750          | 677             | 171        | 35         |











- 각 부처에서는 **전국의 소관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1 시설물 관리자는 물류시설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5월 29일 (금)부터 6월 5일(금)까지 해당 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② 각 지자체는 관내 주요 물류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5월 29일(금)부터 6월 11일(목)까지 지자체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 ③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은 택배터미널·물류 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6월 11일(목)까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물류센터 32개소에 대한 점검은 6월 1일(월)까지 우선 완료하며, 국토교통부는 물류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대형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3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해수부(항만·수산물창고), 환경부(유해물질창고), 관세청(보세창고) 등 각 부처는 소관하는 시설 13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 합동점검 시 위험요소는 가급적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는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통보하며, 지속 모니터링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3 사업장 긴급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업장 내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시다수의 확진환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주간** (6월 1일(월)~6월 14일(일)) **사업장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콜센터 △IT산업 △육가공업 △전자부품 조립업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 1,75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지침 준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자체점검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패트롤 점검과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107개소) △건설현장 안전지킴이(200명) 등을 통해 건설 현장 1만500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 \* **주요내용:** 유증상자 즉시 퇴근·출근금지, 노동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작업장 및 휴게실·식당 등 다기능 공간 소독·청결 및 환기, 소모임 자제 등
  - 제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257개소) 등이 2만1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도 시 방역관리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 □ 이와 함께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입국 당시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무자격 체류자에 의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우선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격리장소 적정여부 확인<sup>\*</sup> 후 "자가 격리 확인서"(5.28현재 962명 발급)를 발급하고, 확인서 미소지자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여 입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 \* 주요 확인사항: 모텔·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장소**로 **1인 1실**, 독립 식사, 1인 1화장실 여부 등











- 또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와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며, 외국인근로자\*와 유선면담(고용센터 통역원 177명 활용)을 통해 주거시설 방역·검진·의료지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것이다.
  - \* (1차) 농축산업·건설업, 10인미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 명 대상(5.1~5.31) (2차) 10~50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여 명 대상(6.1~6.30)
-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 검사 유도 등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주요사항: 자가격리 수칙 준수, 진단검사 시 통보의무 면제, 치료비용 국가부담 등
- 특히 소모임, 회식, 동아리 활동 자제 등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것이다.

## 4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유형별 일반수칙 중심의 권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 <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 >

| 주요 지표             |              | 위 험 도        |              |
|-------------------|--------------|--------------|--------------|
| 구표 시표             | 낮음(0점)       | 보통(1점)       | 높음(2점)       |
| ·(밀폐도) 공간의 밀폐정도   | 대체로 상시 환기 가능 | 일정수준 환기 가능   | 대체로 환기 불가능   |
| ·(밀집도) 이용자간 밀집정도  | 대체로 거리두기 가능  | 일정수준 거리두기 가능 | 대체로 거리두기 불가능 |
| ·(군집도) 이용자의 규모·수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
| ·(활동도) 비말 발생 가능성  | 거의 없음        | 일상적 대화 수준    | 적극적 비말 생성    |
| ·(지속도) 이용자 체류 시간  | 수분~수십분 내     | 1시간 내외       | 수 시간 또는 그 이상 |
|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 | 대체로 준수 가능    | 일정수준 준수 가능   | 때제로 준수 불가능   |

- 고위험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헌팅포차,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8개 시설이다

### < 고위험시설 목록 >

| 시설 유형 | 고위험시설   |
|-------|---|
| 음식점   | 헌팅포차, 감성주점  |
| 유흥시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b>, 단란주점, 콜라텍</b>                  |
| 여가시설  | 노래연습장   |
| 체육시설  |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 공연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

-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예) 유흥주점: ①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②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 룸 등) 1㎡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③테이블 간 1m 간격유지 ④룸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충족 시 **중위험시설로 하향 가능**

### 【 붙임2,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 요건 】











○ 아울러 8개 고위험시설별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

###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요약) >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공통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성명, 전화번호,<br>신분증 확인)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br>작성<br>(본인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작성,<br>신분증 제시)<br>■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br>출입금지 |
| 헌팅포차,     |  |  |
| 감성주점      | ■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 유흥주점, 콜라텍 |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br>■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br>  |
| 단란주점      | ■ 걸입  '옷 시크 네 는 포국제 비시<br> <br>  |  |
| 노래연습장     |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br>■ 손님 이용 룸은 소독 실시 후<br>재사용   |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br>경우)   |
| 실내 스탠딩    |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U 7 410  |
| 공연장       |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
| 실내집단운동    | ■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
| (격렬한GX류)  |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 ■마스크 착용  |
| *줌바, 태보,  | 소독(대장 작성)  | ■ 비二→ 역 <del> </del>   |
| 스피닝 등     |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

- □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역수칙의 이행관리를 위해 **6월 2일(화) 18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 \* ①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u>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u>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QR코드)**를 활용하여 이용자 정보를 안전 하게 수집·분산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전자출입명부'는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1주간, 서울· 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 \*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6월 10일(수)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 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
    - 또한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하여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여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위험시설  | 선정 및  | 전자출  | 입명부시스템은 | 감염병 | 위기경보 | '심각', |
|--------|-------|------|---------|-----|------|-------|
| '경계'단계 | 인 경우여 | 에 한해 | 적용한다.   |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b>관계부처 협조</b> 활 |
|---|
|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감염발생       |
| 위험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 5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5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7,131개소 △종교시설
     3,935개소 등 총 22,304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경상남도에서는 야구장·축구장을 점검하고 지침을 안내했으며, 마스크 미착용 등 23건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37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 △호텔/콘도업 6개소 △야구장 4개소
     등 47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유원시설·야영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울산·충북)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야구·축구장에서 거리 두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제주)를 발견하여 시정요구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79개반, 1,150명)으로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973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4,72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2,557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 □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 재난문자**\*(75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4,612**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 비대면 종교행사 당부, 모임·행사·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지키기 등

#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5월 30일 18시 기준, **4,501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147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총 **36,202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89.8% 설치되었다.
  - 어제(5월 30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모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을 통해 확인되어 고발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 착용한 사람은 총 77명**이며, 이 중 67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0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6개소(2,83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1.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 2. 고위험 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3. 고위험 시설 대상 행정조치 현황
  - 4.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 5. 감염병 보도 준칙
  - 6.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헌팅포차,<br>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지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br>수기출입명부 작성<br>(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br>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br>■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br>출입금지                            |
| 유흥주점 <i>클</i> 립, 룸실롱 등),<br>콜라텍 |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br>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br>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 단란주점                            |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
| 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지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br>수기출입명부 작성<br>(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br>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br>■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br>출입금지<br>■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











|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br>수기출입명부 작성<br>(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br>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br>■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br>출입금지 |
| 실내 스탠딩   |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 공연장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br>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
|  | ■ 방역관리자 지정   |  |
|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
|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br>이상 간격 유지  |  |
|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br>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br>수기출입명부 작성<br>(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br>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br>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br>출입금지   |
| 실내집단운동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 ( <b>격렬한GX류</b> )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br>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
| 11, 114, 1150  | ■ 방역관리자 지정   |  |
|  | ■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
|  | ■ 1일 1회 사워실·탈의실 등 소독때장작성   |  |
|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br>이상 간격 유지  |  |











# 고위험 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조건

| 시설명                                     | 위험요소        |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
|---|-------------|--|
|   | 밀폐도         | - <b>자연환기</b> (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b>기계환기</b>   |
| 실내집단운동<br>(격렬한 GX)                      | 밀집도,<br>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m²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운동공간 등) 1m²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   | 밀폐도         | - <b>자연환기</b> (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b>기계환기</b>   |
| 노래연습장                                   | 밀집도,<br>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m²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m² 당 1명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으로 제한 (안내물 부착 등으로 최대 이용인원 표시)                                       |
|   | 밀폐도         | - <b>자연환기</b> (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b>기계환기</b>   |
| 실내 스탠딩<br>공연장                           | 밀집도,<br>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br>시설 전체면적(허가·신고면적) 4m²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객석 등)<br>1m²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
|   | 활동도         | - <b>스탠딩 구역 운영 금지</b> , 좌석 배치를 통해 이용자간 거리 두기 유지  |
|   | 밀폐도         | - <b>자연환기</b> (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b>기계환기</b>   |
| 헌팅포차,<br>감성포차,<br>유흥주점,<br>단란주점,<br>콜라텍 | 밀집도,<br>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m²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m²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간 간격 유지(1m) ※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 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인정 |
|   | 활동도         | - <b>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b> (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











# 고위험 시설 대상 행정조치 현황

# □ 보건복지부 행정조치 현황

| 구분   | 5.8일 조치                            | 5.29일 조치  | 6.2일 조치  |
|------|------------------------------------|---|--|
| 적용기간 | 5.8 ~ 6.7                          | 5.29 ~ 6.14   | 6.2 ~ 별도 해제 시  |
| 대상지역 | 전국                                 | 수도권<br>(서울, 인천, 경기)   | 전국   |
| 대상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리텍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리텍,<br><u>헌팅포차, 단란주점</u><br><u>노래연습장</u><br><u>핵원 PC방</u> | 유흥주점 김성주점, 콜리텍<br>헌팅포차, 단란주점,<br>노래연습장<br>실내집단운동(GX),<br>실내스탠딩 공연장                       |
| 조치내용 | (집합제한)<br>-운영자제 권고<br>-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 (집합제한)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 (집합제한) -운영자제 권고 -운영시 방역수칙 준수 (위험도 하향 조정) -지자체장이 위험도 하향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가능 |

※ 밑줄 그은 부분은 이전 조치와 다른 부분











#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 1 전자출입명부 모델



-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 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생성
  -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 ⑤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2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 ①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 명령 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등
  -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②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 ③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④ (개인정보관리) <sup>①</sup>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 → <sup>②</sup>분산 보관·관리→ <sup>③</sup>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 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처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